

제 20 장 학술지 연구윤리위원회

신설 2011년 3월 29일

개정 2012년 11월 27일

개정 2022년 4월 19일

제51조 (설치와 구성) 의과대학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의 연구(출판)윤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지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. [개정 2022년 4월 19일]

1. 학술지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[개정 2022년 4월 19일]
2.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과대학 학장이 위촉한다. 윤리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위촉한다.

제52조 (기능)

학술지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지 연구(출판)윤리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[개정 2022년 4월 19일]

1. 학술지 연구(출판)윤리에 대한 심의, 연구 및 징계 심사 [개정 2022년 4월 19일]
2. 중복출판, 이중게재 감시
3.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향 제시
4. 기타 의과대학장이 부의하는 사항